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7. 21 선고 2019가단7168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전 문

원 고 A

피 고 B

소송대리인 C, 법무법인 신의 담당변호사 조철호

변론 종결 2020. 7. 7

판결 선고 2020. 7.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3,794,5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지 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신의 소유인 대전 유성구 D 임야 11,815㎡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1994. 1. 28. 접수 제6182호로 근저당권자 E, 채권최고액 5,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나. E는 2012년 사망하였고, 피고는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E의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은 주식회사 F이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495041지급명령에 기하여 신청한 강제경매에 의하여 대전지방법원 G로 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어 199,100,000원에 매각되었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에게는 E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이 전부 배당되었으나, 배당액 부족으로 후순위 채권자인 서울신용보증재단에게는 채권액 22,951,918원 중 4,167,715원, H에게는 채권액 175,129,500원 중 39,273,070원, 주식회사 F에게는 26,233,423원 중 5,882,887원이 각 배당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위 후순위채권자들이 배당받지 못한 채권액의 합계는 174,991,169원이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 을 3,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E로부터 돈을 빌리고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2006.11. 6. 당시 남아 있는 채무액이 1,000만 원이었는데, E를 단독 상속한 피고가 채권최고액대로 5,000만 원인 채권증서를 작성해 주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5,000만 원을 배당받아 일부를 원고에게 돌려준다고 하여 채권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런데 원고의 E에 대한 실제 채무액은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1. 6.부터 배당기일인 2019. 4. 4.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6,205,479원인바, 피고는 5,000만 원에서 채무원리금 16,205,479원을 공제한 33,794,521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배당받았기에 이를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에 관하여 이익을 한 여부 또는 형식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 할 것 이고(대법원 1988. 11. 8. 선고 86다카2949 판결 참조), 배당절차에서 권리 없는 자가 배당을 받아갔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은 그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더라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사 람이지 이것이 다음 순위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채무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28412판결, 대법원 2000.10. 10. 선고 99다53230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 H, 주식회사 표끼 배당액 부족 으로 배당받지 못한 채권액의 합계가 174,991,169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 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이라고 주장하는 33,794,521원이 위 금액 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명백하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실제 채권액보다 많 은 금액을 배당받았다 하더라도 그 배당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겸 채무자인 원 고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실제 채권액보다 많은 금액을 배당받았음을 이유로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없으므로,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이택순